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3. 16 선고 2021가단25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

변 론 종 결 2021. 12. 8.

판 결 선 고 2022. 3. 1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농업회사법인C유한회사 사이에 2020. 11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농업회사법인C유한회사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. 11. 6. 접수 제40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0. 24. 농업회사법인C유한회사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와 사이에 보증금액 225,000,000원, 보증기간 2019. 10. 24.부터 2021. 10. 24.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D은행으로부터 25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, 원고는 2021. 3. 12.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226,806,79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, 소외 회사는 2020. 11. 26.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한 상태였다.

다.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2021. 3. 29. “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25,703,908원 및 그중 225,407,482원에 대하여 2021. 3. 18.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”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(이 법원 2021차전927).

라. 소외 회사는 2020. 11. 6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마.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(이 사건 부동산 포함)은 609,708,500원, 소극재산은 742,000,000원이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12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,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나, 을1,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,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.

판사 윤화량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전라남도 목포시 임야 330㎡
2. 전라남도 목포시 임야 560㎡
공유자 지분 전부

-이 상-

